

# 규정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

관련 항목: JEA-RA, JEB-RA, JEE, JEE-RA  
책임 맡은 사무실: 수석 학업 책임관(Chief Academic Officer)  
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  
(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)

## 학과목 취소 및 퇴교(Student Withdrawals from Classes and School)

### I. 목적

이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개별 수업 취소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(MCPS)에서의 영구적 퇴교에 관한 절차를 위해 책정되었습니다.

### II. 정의

자격 학생(*eligible student*)은 18 세 이상이거나 친권으로부터 독립한 학생입니다.

### 3. 행정절차

#### A. 개별 수업 취소

1. 학교에 의해 시작되는 주관한 수업 취소는 만약 학생이 (1) 자주 또는 심각하게 학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나 (2) 학생이 잘 준비되어있지 않은 수준의 반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. 학교 교직원들은 수업을 취소하기 전, 학생, 학부모/후견인과 교사의 면담을 통해 해당될 경우에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참여하는 공동의 문제 해결 회의를 충분히 실행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학생이 학과목 요건을 충족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. 행정담당/대리인은 주어진 정보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 회의는 MCPS Form 272-10, *Documentation of Interventions* 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합니다.
2. 학생의 자체 수업 취소는 학생과 학부모/후견인이 학생이 수업을 취소하는 것이 학생에게 이롭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.

학생에 의한 수업취소는 카운슬러가 검토해야 하며 학부모/후견인과의 이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학생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, 학생의 수업취소 요청은 학부모/후견인이 서면으로 승인을 하고 카운슬러가 이를 검토하며 과목을 취소할 경우, 학생과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. 카운슬러의 추천이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위해 행정담당/대리인에게 제출됩니다.

3. 학생의 수업 취소의 대안이 학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. 학생은 같은 과목 영역의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 학업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만약 대안이 없을 경우, 학생은 다른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. 행정담당/대리인은 필요한 경우와 해당할 경우, 학생의 시간표를 자유재량으로 조정하게 됩니다.
4. 성적과 학점은 다음 지침에 따라 주어지게 됩니다:
  - a) 학생이 5 째주(25 학교일) 전에 수업을 취소한 경우, 학생의 영구적 기록 또는 성적표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.
  - b) 학생이 5 째주(25 학교일)이 끝난 후에 수업을 취소한 경우, "withdrew" 또는 "W" 표시가 취소한 날짜와 함께 표기되며 취소했을 때의 성적평균이 성적표나 영구적 기록에 표기됩니다.
  - c) 학생은 같은 과목영역에서 다른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 경우, 학점취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

#### B. 학교에서의 영구적인 퇴교

1. 교직원이 최소 18 세 이상으로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퇴교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의도를 알게 될 경우, 교직원은 이를 학교 행정담당에게 알려서 학생이 현재 다니거나 다른 적절한 MCPS 프로그램에 재학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.
  - a) 교육적 인터뷰를 하여 MCPS Form 565-4a, *자퇴방지를 위한 교육적 인터뷰(Educational Interview for Withdrawal Prevention)*를 작성합니다.

- b) 학생, 학부모/후견인, 옹호자나 변호사, 교사, 카운슬러, 행정직원 등 적절한 사람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합니다. 학부모/후견인에게 반드시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절차에 학부모/후견인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.
2. 만약 위의 단계를 모두 마친 후에도 학생이 영구적 퇴교/자퇴를 선택할 경우, MCPS Form 565-4, *Student Permanent Withdrawal* 을 기재합니다. MCPS Forms 565-4, *Student Permanent Withdrawal* 와 565-4a, *Educational Interview for Withdrawal Prevention* 의 사본이 양식에 따라 배부되어야 합니다.

관련 자료: Annotated Code of Maryland, *Education Article*, §7-301, and *General Provisions*, §1-401; *Code of Maryland Regulations* 13A.08.01.01 and 13A.08.01.07e

**규정변경사:** 이전 갱신번호 515-2, 1979년 1월 4일; 1986년 12월 갱신; 2012년 9월 24일 갱신; 2015년 5월 15일 갱신; 2017년 6월 19일 갱신.